

지도 · 경제 스토리지 복제체계 구축 시방서

2026. 10.

ICT전략실	과장 이태용	02-2240-2472	FAX 02-2240-3099
	직원 이유진	02-2240-2199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목 차

I . 사업 개요	1
II . 사업 내용	2
III . 일반계약조건	3
IV . 붙임 및 별지서식	9

I 사업 개요

□ 사업 명 : 지도·경제 스토리지 복제체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사업배경 및 목적

○ 재해복구센터 복제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한 디스크 추가 도입

- 주센터 스토리지 데이터 복제·보관 용도의 디스크 증설

※ 기구축 복제 회선 및 재해복구센터 복제 스토리지 활용으로 해당 인프라 별도 구축 비용은 불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 본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자 선정

□ 사업추진일정

선 정 절 차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6. 10. 2.(금) 17:00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홈페이지 공고
접수마감	'26. 10. 12.(월) 10:00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개찰 1순위자 통보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26. 10. 12.(월) 11:00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26. 10 월 중	디스크 수급시기 고려하여 진행

※ 전체일정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II 사업 내용

□ 주요내용

- 재해복구센터 통합 스토리지 용량 확장을 위한 SSD 저장장치 구매

□ 도입품목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스토리지 디스크 (SSD)	Unity 7.68TB ALL FLASH 25X2.5 SSD	7식	재해 복구센터 통합 스토리지(Dell EMC Unity 480H) 용량 증설을 위한 디스크로 호환성 필수

□ 일반요구사항 및 세부 규격

구 분	내 용
일반 요구 사항	□ 본회 IT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 제시(RAID 구성 등) □ 제안된 HW는 유지보수(무/유상) 및 기술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 제안한 HW는 장애 시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서 및 기술지원 협약서 제출 □ 제안하는 제품은 본회에서 운영중인 스토리지(Dell EMC Unity 480H) 내 증설 시 호환 및 동작하는데 기술적 제약사항이 없어야 함.
세부 규격	□ 스토리지 디스크 - 규 격 : Unity 7.68TB All Flash 25x2.5 SSD - 호환성 : Dell EMC Unity 480H 장비 내 증설 대상, 호환성 필수
기 타	□ 무상 하자 보수는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검사는 지정된 스토리지 내 설치 후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디스크 설치 및 스토리지 적용 제반 비용 제안사 부담 - 주센터 장비(Unity 480F) → 복제 장비(Unity 480H)로 복제 용도의 디스크

Ⅲ 일반계약조건

□ 일반조건

- 본 시방서는 수협중앙회(이하 “수협”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지도·경제 스토리지 복제체계 구축」와 관련하여 “수협”이 요구하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고, 설치된 디스크를 스토리지에 적용 및 용량을 증설하여 “수협”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제조회사(외국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이하 “제조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제품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수협”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납품 설치 및 시험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제품 납품·설치 결과가 “수협”이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협”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제품들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수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이나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 납품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세부규격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사양, 입출력 성능의 일반적 성능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 또는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원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한 제품(디스크)는 “수협”이 운영 중인 모든 전산장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설치 및 성능시험 시 야기되는 문제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운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및 인식에 대한 호환성 문제, 데이터 적재 테스트 등 사업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제품의 설치 시 “수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수협”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고,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해 납품·설치된 제품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는 “수협”이 지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수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수 결과 하자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제품 규격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수

협”에게 충분히 제공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치 및 인식 등 작업 과정에서 설치장소 내의 타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 등의 손상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수협”이 언급한 사항 외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협”에게 통보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 최종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약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전문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복구 완료 시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 및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 설치된 제품(디스크)의 장애가 1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제품을 제공/교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제품을 교체할 경우 동일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세부 활동 사항은 “수협”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협”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품 결함으로 인해 패치 버전이 발표되었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련 내용을 “수협”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납품 제품의 결함에 대비하여 일

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수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제출시기에 맞춰 아래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기간 및 계약 후에도 추가 제출 요구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ICT전략실(3층)
이태용(Tel: 02-2240-2472), 이유진(Tel: 02-2240-2199)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입찰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일 것 ·중소기업에 해당할 시 제출
납품실적증명서	1부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납품 실적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유효기간 이내 일 것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
제조업체 공식 서비스 파트너 증명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	각1부	-
업체 일반현황	1부	·붙임1 <서식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1부	·해당 신고서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계약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품목 산출 내역서	1부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붙임1 <서식1>

○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완료보고서	1부	·제품 설치 내용 및 세부명세 포함
유지보수 체계도	1부	·비상연락망 포함
검사보고서	1부	·사진 및 출력물 등 작업/설치 결과 포함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
정품보증서	1부	-
제품 라이선스	1부	·디스크 제조사 라이선스 존재 시 제출
하자보증이행증권	1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이하
기타	-	·기타 “수협”의 검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

□ 보안유지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협”이 보안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 및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수협”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수협”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4. “수협”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기타사항

- 본 지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지방서의 내용의 기록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고 소송 관할법원은 “수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일반 조건 또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수협”은 부정당 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IV 불임 및 별지서식

불임 1 제출서류 별첨서식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2. 업체 일반현황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 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2>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 (년 개월)		
8. 인력 보유 현황	관리분야 명, 기술분야 명		
9. 주요 연혁			